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2나275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2나2758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10787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위종욱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최재연, 서민정

변론 종결 2024. 4. 17.

판결 선고 2024. 5. 29.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10787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7. 3.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67,496,9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496,9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B는 27년 3개월간 경찰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2005. 4. 20. 퇴직한 사람이며, 피고는 B의 여동생이다.

나. B는 퇴직 후 2005. 7. 6. 원고로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으로 124,083,890원(= 퇴직급여 109,491,980원 + 퇴직수당 37,870,940원 - 가계안정자금 23,279,030원)을 지급받았다.

다. B는 경찰공무원 재직 중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 위반의 혐의로 2005.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2668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05. 11. 3. B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1. 11. 확정되었다.

라. B의 모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3. 6. 사망하였고, B와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직계비속 상속인들 6인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2017. 3. 10.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등기부상으로는 그 일자가 2016. 3.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분할협의 서면이 작성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2017. 6.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6. 30. D에게 매도하여 2017. 7. 14.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6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기지급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1/2 상당액을 환수할 채권을 갖고 있다. B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6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경우 그 금액의 2분의 1,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은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급여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27년 3개월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하면서 2005. 7. 6. 원고로부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4,083,890원을 지급받았으나 2005. 11. 3.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위 형사판결 확정일인 2005. 11. 11. B에 대하여 기지급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1/2 상당액을 환수할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갑 제2,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11. 29. 현재 172,998,344원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어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지분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110064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2)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계산 방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송파구 F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약이 있었던 2017. 3. 10. 당시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순위번호 1, 3번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6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이 2,000만 원이었던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G가 임차보증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7. 3. 2.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위 임차보증금 4억 2,000만 원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times$ 1/6)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3,333,333\text{원} = 2,000\text{만 원} \times 1/6$, 원 미만 버림)과 G가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 4억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times$ 1/6) - $3,333,333\text{원}$ - 4억 2,000만 원]만이라고 할 것이다[이 법원의 서울 송파구 F동장에 대한 2023. 6. 16.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에는 B와 H(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고(이들이 본인 겸 다른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B는 G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채무를 지게 된다].

3)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부존재 및 사해행위 불성립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540,000,000원 이하일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423,333,333\text{원} (= 2,540,000,000\text{원} \times 1/6, \text{원 미만 버림})$ 이하이므로, 그 가액에서 위 $3,333,333\text{원}$ 과 4억 2,000만 원을 공제하면 남는 부분(= $423,333,333\text{원}$ 이하의 금액 - $3,333,333\text{원}$ - 4억 2,000만 원 ≤ 0)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540,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감정인 I의 부동산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23. 12. 28.경 시가는 1,010,426,52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일에 가까운 2017. 6. 30.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10억 원(매매대금 5억 8,000만 원 + 매수인이 승계하는 임대차보증금 4억 2,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D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있었던 2017. 3. 1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위 각 금액을 2.5배 이상

초과하는 2,540,000,000원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G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있었으므로, G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G의 임차보증금 4억 2,000만 원을 B의 지분 상당액에서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가 근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G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위 주장의 근거로서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99다51203 판결을 들고 있으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판결은 임차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일 이후에서야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G가 이 사건 분할협의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설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B의 지분 상당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망인이 사망한 2016. 3. 6.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임차인이었던 J의 임차보증금 3억 원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의 판단 및 책임재산의 공제 시점을 상속개시일인 2016. 3. 6.로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68,621,740원이었던 사실, 그 당시 임차인 J가 3억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868,621,740원 이하일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부분[= (1,868,621,740원 이하의 금액 $\times$ 1/6) - (68,621,740원 $\times$ 1/6) - 3억 원 $\leq$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868,621,74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중연

판사김경년

판사이종욱

별지